

진로 및 취창업지원 규정 (명칭변경 2021.03.09.)

제정 2017년 8월 28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. 3. 1.)

제2장 운영

제2조(주관부서)

진로 및 취·창업지원 담당 부서는 교육혁신처 취업팀(이하 '주관부서'라 한다)으로 한다.
(개정 2021. 3. 1., 2023. 8. 11.)

제3조(지원방안)

- ① 대학은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주관부서 산하의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②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은 별도 운영지침에서 정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③ 대학은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외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. 협력의 범위와 조건은 별도 운영지침에서 정한다. (개정 2021. 3. 1.)

제4조(취업주관교수)

- ① 주관부서는 학과 단위의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을 관리, 그리고 취·창업지원 업무를 위하여 취업주관교수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② 취업주관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1. 3. 1.)
 1. 학생 취·창업 현황 조사
 2. 학생 취·창업 장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
 3. 학생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
 4. 취업대상자 추천 및 장학생 선발
 5. 기타 학생 취·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

제5조(취업통계)

- ① 학부(과)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속 학부(과)의 학생취업 및 창업자 현황을 조사하여 소속대학 학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② 각 단과대학 학장은 학부(과)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③ 주관부서장은 각 단과대학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확정된 내용은 대학 정보공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. (개정 2021. 3. 1.)

제6조(정보관리)

- ① 주관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생 취업자 및 창업자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사전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하여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업무에 활용하며, 정보 제공 시 목적과 정보 수신자의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.
(조 신설 2021. 3. 1.)

제7조(수요조사)

-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재학생, 졸업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.
 - ② 수요 및 만족도 조사는 주관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행정부서나 학과에 요구할 수 있다
 - ③ 조사 결과는 관련 부서에 환류하여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업무 개선에 사용한다.
- (조 신설 2021. 3. 1.)

제8조(환류체계)

주관부서는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업무 개선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프로그램 성과 분석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3. 1.)

제9조 <삭제 2023. 8. 11.>

제3장 취·창업관리위원회 (명칭변경 2021. 3. 1.)

제10조(위원회의 목적)

대학의 학생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취·창업지원 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취·창업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를 둔다. (개정 2021. 3. 1.)

제11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부처장, 기획부처장, 각 단과대 부학장, 창업지원단장, 교육혁신처 산하 각 센터장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1. 3. 1., 2023. 8. 11.)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혁신처 취업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23. 8. 11.)

제12조(기능)
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1. 3. 1.)
- ①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(개정 2021. 3. 1.)
 - ② 취·창업 성과 관리 및 개선안 검토 (개정 2021. 3. 1.)
 - ③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유관부서 간 상호 연계 및 역할 조정 (개정 2021. 3. 1.)
 - ④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프로그램 성과 및 환류 시스템 관리 (개정 2021. 3. 1.)
 - ⑤ 기타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

제13조(위원장의 권한)

-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재적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.

(조 변경 2021. 3. 1.)

부 칙(2017. 8. 28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03. 01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학년도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3. 1.)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8. 11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